

청산되지 않은 역사의 실천적 이론

다카키 겐이치 지음 《전후보상의 논리》

김영호

경북대 교수·경제학

전후배상, 이것은 50년전에 실현되어야 할 개념이요, 그때 실현되었어야 할 기본과제였다. 그러나 전후 5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과거 제2차대전 이전의 식민지 피해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5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고, 새삼 분노하고, 새삼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청산되지 않은 역사. 그 역사가 주는 숙제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면서, 우리는 때마침 출간된 다카키 겐이치(高木健一) 저 《전후보상의 논리》(최용기 옮김)를 대하게 되었다. 저자는 책 안에서 전후보상문제를 앞장서 실천하여, 시베리아 동포들이 이른바 '다카키 루트'를 통해 일부 귀환할 수 있게 하였고, 정신태문제·피폭자문제 등에 깊이 관여해온 국제인권변호사이다. 그의 양심적인 행동과 용기있는 실천에서 우리나라 이론적 탐색의 심대성이라는 점에서 우선 '살아 있는 책'이라는 무게를 느끼게 된다.

전후책임에 입각한 '보상' 개념

전후보상이란 무엇인가. 저자는 전후보상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먼저 전쟁책임과 전후책임을 구별한다. 전쟁책임은 침략전쟁을 수행한 지도자에 대한 단죄의 논리인데 비하여, 전후책임은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갖가지 피해를 회복하는 의무이다. 전자는 형사재판적 기능인데 비하여 후자는 민사적인 피해회복의 논리이다. 바로 그러한 전후책임에 입각하여 민사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보상이 전후보상이란 것이다. 전쟁책임에 대해서는 배상(reparation)이 따르고, 전후책임에 대해서는 보상(compensation)이 따른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제2차세계대전때 교전상대국이 아니었고 승자와 패자관계가 아니었으므로, 형사적 배상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피해에 대한 민사적 보상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에서도 이른바 청구권 처리가 있었으나 청구권은 단순히 소유재산에 대한 재산청구이지 식민지 피해에 대한 보상은 아니었다. 따라서 한일간에 전후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 1965년의 한일조약으로 과거문제는 모든 것이 청산되었다는 주장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한일청구권 경제협력협정 제2조에 20 출판저널

정신태·피폭자문제 등에 깊이

관여해온 국제인권변호사

다카키 겐이치의 《전후보상의 논리》는

전후보상문제에 앞장서 실천한 경험을

토대로 이론적 탐색을 시도하고 있다.

저자는 '전후보상'이란 민사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역사의

과제임을 언급하고 아시아 각국의

전후보상 요구의 움직임을 생생히

들려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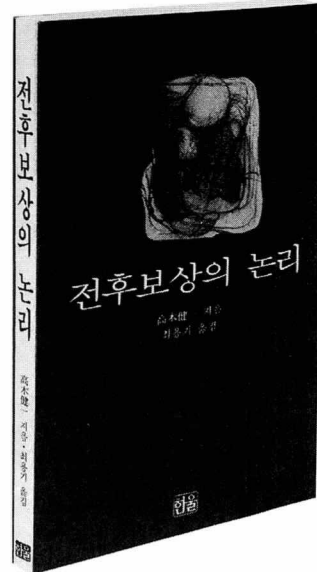
는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범인도 포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 그리고 그 국민과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또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 규정에 대하여 그것은 국가의 권리와 국가의 개인에 대한 외교보호권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지 개인의 청구권이나 민간의 피해보상 요구의 소멸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그 점은 일본정부의 일본국회에서의 답변자료로써도 확인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내외인 평등' '국제인도법' 강조

이러한 전후보상에 대한 일본의 여론은 어떠한가. 일본 리서치 센터가 실시한 최초의 본격적인 여론조사(1991. 12. 24)에서는 한국에 대한 '사죄와 보상은 끝났다'는 의견이 10.7%, '인도적인 입장에서 적절한 지원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가 27.7%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와 보상을 해야 한다'가 35.6%로 나타났다. 특히 이 35.6% 속에는 고학력자와 젊은이들이 많았다.

이어 아시아신문이 행한 1993년 11월 14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정부가 전후보상에 응해야 하느냐에 대하여 '그렇다'가 51%, '아니다'는 37%였는데, 20~24세에서는 '그렇다'가 72%로 높았다.

그렇다면 전후보상의 기준은 무엇인가. 저자는 "전쟁희생자의 원호의 공평을 요구하는 관점"과 "아시아에 대한 침략의 보상"으로서의 관점을 들고, 전자에 대해서는 법률 앞에 내외인의 평등이라는 기준을 강조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국제인도법을 강조하고 있다. 법 앞



서 이제 전후보상문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로 클로즈업되고 있다.

개인·민간단체의 움직임 육성으로 소개

이어서 저자는 전후보상에 관한 각국의 사례를 자세히 소개한 후, 일본에 대하여 전후보상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민간단체의 움직임을 소개하고 종합하고 있다. 사할린 잔류 한국·조선인, 재한피폭자, BC급 조선인 전범, 조선인 군인군속, 종군위안부, 중국·대만의 피해자들의 움직임, 아시아·태평양 각 지역에서의 소리를 자세히, 그리고 감동깊게 소개하고 있다. 전후보상운동에 깊이 참여해온 저자가 아니고서는 소개하기 어려운 내용이 생생한 육성으로 울리고 있다.

저자는 1993년 여름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조사결과 발표가 획기적이었다고 평가한다. 이 조사발표에서 일본정부의 강제를 인정, 사죄하고 '보상에 가늠하는 조치'를 약속함으로써 전후보상의 길을 열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호소카와 내각에서 침략전쟁을 인정하고 사죄한 것은 전후보상의 길을 한걸음 더 전진시켰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의 제도적 구체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죄를 전후보상으로 연결시키는 명확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보다 명확히 침략사실을 인정하고, 보다 명확히 사죄를 표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후보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일본내의 민주주의의 성숙과 함께 동아시아 시민연대가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저자가 한일관계를 전쟁을 통한 승자·패자의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배상보다는 보상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있을 수 있다. 구한말 을사보호조약이나 한일합방조약의 소급원인무효론의 입장에서 보면, 한일기본조약의 개정과 함께 배상요구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여자정신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도 미묘한 입장차이를 낳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보상문제에 앞장서 실천하고 생생한 운동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이론화한 이 책은 해방 50주년을 맞이하여 꼭 읽어야 할 양서이며, 이 책을 통하여 우리는 해방 50주년의 의의와 과제를 더욱 절감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한울/A5신/220면/7000원

에 내외인의 국적을 묻지 않고 평등하다는 원칙에 서게 될 때, 일본의 원호입법의 국적 조항에 걸려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조선인 징병·징용자, 피폭자 등을 구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제인도법의 기준에 서게 될 때 전시중 타민족이나 개인에 대한 조직적인 비인도적 범죄행위를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여자정신대 문제에 대한 보상도 이러한 국제인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대내적 전후처리를 대외적 전후처리로 연결시키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중요한 전후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저자는 우선 아세아에 있어서 전후와 냉전이 함께 왔기 때문에 전후보상 문제보다 대공산권 전략이 현실적으로 우선했기 때문이라는 점과 아울러 동아시아의 민주주의의 미성숙을 들고 있다. 또한 피해국의 차이도 지적하고 있다. 즉, 구미에 대하여 큰 영향력을 갖는 유대인들에 비하여 아시아인들은 구미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합국의 최고사령관이 구라파에서는 자유주의적인 아이젠하워 장군이었던데 비하여 동아시아에서는 군사중심주의의 맥아더 장군이었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도 흥미깊은 대목이다. 그러나 이제 냉전은 끝나고 일본에 있어서도 시민사회가 성숙하였으며, 동아시아 각국에서도 민주주의의 진전과 함께 인권의식이 신장하였다. 현재의 인권의식의 신장은 과거의 인권억압 문제의 해결을 외면할 수 없으며, 자국내 인권의식의 신장은 대외적인 인권의식의 신장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